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45 발의연월일: 2025. 3. 20.

발 의 자:이종배·서천호·박덕흠

이만희 • 김위상 • 이종욱

김성원 · 성일종 · 신동욱

김용태 • 권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

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8조의2를 제348조의3으로 하고, 제3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8조의2(특수사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48조의2(특수사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u> 처한다.</u>
第348條의2(便宜施設不正利用)	第348條의3(便宜施設不正利用)
(생 략)	(현행 제348조의2와 같음)